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414
----------	------

2026년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I. 조례안 개요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2월 9일 박석 의원
-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 상정일자 :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3월 4일 상정·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석 의원)

1. 제안이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돌봄통합 인력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도지사가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돌봄통합 인력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

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도지사가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개정안의 제안 개요

-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의 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가 2025년 4월 1일 신설되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
-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 ‘우선지정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시장의 책무)에 시장이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④ (생략)</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2 검토 의견

가. ‘우선지정일자리’의 정의 신설(제2조제4항)

- 본 개정안은 「노인일자리법」 제15조2의 ‘우선지정일자리’ 개념을 반영하여 조례에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 설></u>	제2조(정의) ----- ----- 4. <u>“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u>

- 2023년 10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됨.
- 같은 법 제15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인 ‘우선지정일자리’를 선정하고 고시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1) 고시(告示):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정행위로 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절차. 대외적으로 고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고시문에 명시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인일자리법」) 개정안

제15조의2[본조신설 2025. 4. 1.] [시행일: 2025. 10. 2.]

- 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25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22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우선지정일자리’에 대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등으로 정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제정령(안) 행정예고

다. 우선지정일자리(안 제6조)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노노케어** 등으로 정함

- 우선지정일자리의 종류는 사업 유형별로 별표로 고시함. 지역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안전통학지킴이, 경로당 급식 지원, 아동 돌봄 지원 등의 공익사업이 포함됨.
-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 관련 사업이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의 모든 사업 유형에 우선지정일자리로 포함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안

제6조(우선지정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별표] 사업유형별 우선지정일자리의 종류

1. 공동체사업단(법 제12조)

사업 유형	주요 내용
지역돌봄 통합지원(공동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도시락·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조

2. 노인공익활동사업(법 제15조)

사업 유형	주요 내용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경로당 배식 지원	경로당에서 배식 등 노인의 식사를 지원
안전통학지킴이	초등학생의 등·하교길 통행 안전을 지원
지역돌봄 통합지원(공익)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돌봄 보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통합지원 신청·발굴 및 모니터링 보조 등 업무 수행

3. 노인역량활용사업(법 제16조)

사업 유형	주요 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	경로당에서 배식·조리 등 노인의 식사를 지원
아동 돌봄 지원	안심 귀가 등 영·유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
지역돌봄 통합지원(역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돌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통합지원 신청·발굴 및 조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업무 수행

나. ‘우선지정일자리’의 우선실시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3조)

- 본 조항은 시장이 상위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우선지정 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여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신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운영 현황

- ‘26년 서울시 어르신 예산은 총 296,653백만원(국비+시비)이 편성되었음. 35%를 부담하는 구비를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446,088백만원임.

<2026년 어르신일자리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시 예산 (A+B)	국비 (A)	시비 (B)	구비 (C)	총 사업비 (A+B+C)	비율
합계	296,653	133,747	162,906	149,435	446,088	-
자치구 사업	277,779	128,087	149,692	149,435	427,214	국30 시35 구35
시직속 사업	18,874	5,660	13,214	-	18,874	국30 시70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수(참여인원 기준)는 2025년 기준 95,201개가 시행되었으며 2026년에는 101,866개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음.
- ‘26년 1월말 현재 97,542명이 참여하고 있음. 노인역량활용사업 등은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사업 개시전 인원은 참여인원으로 포함되지 않음.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활동비가 29만원으로 사회봉사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그 외 일자리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이 가능함.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종류, 대상 및 활동내용〉

(‘26년 기준)

유형	일자리수 (참여인원기준)	참여대상	참여기간	근무시간/ 임금	활동성격
노인공익 활동지원	73,785개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0~12개월 (평균 11개월)	월30시간/ 월29만원	봉사 (사회활동)
노인역량 활용	17,658개	65세이상 (일부 60세)	10개월	월60시간/ 월63.4만원 (주휴수당별도)	근로계약 (사회보험 가입)
공동체 사업단	7,720개	60세이상	연중	사업별 상이	
취업 지원	2,703개	60세이상	연중	사업별 상이	

- ‘노인공익활동지원사업’ 은 근무시간이 월 30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근무와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사업임.
 - ‘노인역량활용사업’ 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가 포함됨.
 - ‘공동체사업단’ 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
 - ‘취업지원’ 은 교육을 통해 민간일자리에 근무를 알선하며 취업사관학교 등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체 어르신 일자리 중 노인공익활동사업이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35개소 기관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하고 있음.
 -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일자리의 31.2%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 63개소로 참여 개소 수가 가장 많음.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별 현황>

(‘26년 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참여인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	비영리단체 등 기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합계	97,542	31,718	18,497	12,984	13,372	9,761	5,828	5,382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별 인원	소계	71,678	15,816	14,967	10,365	13,002	9,038	3,377	5,113
	노노케어	9,140	725	670	2,336	91	2,579	1,164	1,575
	취약계층지원	320	104	166	15	-	-	-	35
	공공시설봉사	61,749	14,903	13,978	7,904	12,896	6,449	2,183	3,436
	경륜전수봉사	469	84	153	110	15	10	30	67
	기타	-	-	-	-	-	-	-	-
노인역량활용사업	16,388	8,917	2,863	1,706	370	632	1,641	259	
공동체사업단	6,934	5,232	667	477	-	91	457	10	
취업 지원	2,542	1,753	-	436	-	-	353	-	

※ '26년 1월말 기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상 등록된 배정 인원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현황>

(‘26년 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수행기관수	시니어클럽 ²⁾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자치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기타 ³⁾
235	21	26	37	63	22	32	34

- 전체 어르신일자리수(참여인원 기준) 101,866개 중 시직속사업이 3,000개로 2.94%를 차지함.

2)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용산구(‘26년4월 설치 예정), 성동구·동작구·서초구(설치 검토중) 외 21개 자치구에 1개소씩 있음

3) 기타수행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2) 서울시 우선지정일자리 운영 현황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활동 현황>

(’26년 기준)

유형	근거법조항 (노인일자리법)	*우선지정일자리 포함 사업	우선지정일자리외 사업
노인공익활동지원	제15조	노노케어 9.4% 경로당 배식 6.3% 안전통학지킴이 7.0%	학교급식,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⁴⁾ 등
노인역량활용	제16조	경로당급식지원 1.5% 아동돌봄지원 5.3%	보육·돌봄·청소년시설 지원,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 시니어컨설팅 ⁵⁾ ,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시설, 기관근무
공동체사업단	제12조		식품, 공산품제조, 카페, 택배 등
취업 지원	제10조		민간일자리 알선

- 서울시는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우선지정일자리’ 선정 고시 이전 부터 우선일자리로 선정된 사업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 중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된 사업은 전체 어르신일자리 29.5%를 차지함.
- 다만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⁶⁾을 위한 우선지정일자리는 ‘26년 어르신일자리사업 배정 당시 미시행되어 ‘27년부터 실시할 예정임.

※ 부서 의견 : 원안가결

-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제2조(정의)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4) 경륜전수: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 세대, 아동, 청소년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건강체조 취미생활지원, 문화공연 활동, 체험활동지원 등의 어르신 일자리가 있음

5) 시니어컨설팅: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일자리 발굴 등

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지원을 위한 도시락·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조를 담당할 예정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신설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과 같이 ‘우선지정일자리’의 정의를 명시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상위법상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우선지정일자리’ 선정 고시 이전부터 공익활동사업 및 역량활용사업 등 해당 사업 유형을 포함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이에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조문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따라서 선언적·책무 규정인 제3조(시장의 책무)에 규정하기보다는 구체적 집행계획을 규율하는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의 각 호에 반영하거나 제7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포함하여 사업 수행시 명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본 개정안은 시장이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서울시는 2025년10월20일 우선지정일자리로 고시된 모든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책무와 같은 포괄적 조항에 개정안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함.
- 또한 관련 규정은 제3조인 시장의 일반적 책무에 두기보다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는 제4조제2항에 반영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제4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414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4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개정안은 시장이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서울시는 2025년10월20일 우선지정일자리로 고시된 모든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책무와 같은 포괄적 조항에 개정안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함.
- 또한 관련 규정은 제3조인 시장의 일반적 책무에 두기보다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는 제4조제2항에 반영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제4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시장의 책무)제3항 ‘시장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제2항제7호를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제안)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 음)</p> <p>4. <u>“우선지정일자리”</u> <u>란 「노인 일자리</u> <u>및 사회활동 지원에</u> <u>관한 법률」 제15조</u> <u>의2에 따라 보건복</u> <u>지부장관이 노인 일</u> <u>자리 및 사회활동</u> <u>지원사업에서 국민</u> <u>의 복지 증진을 위</u> <u>하여 우선 실시할</u> <u>필요가 있다고 인</u> <u>정·선정한 일자리를</u> <u>말한다.</u></p>	<p>(<u>현행과 같음</u>)</p> <p>(<u>현행과 같음</u>)</p> <p>(<u>개정안과 같음</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현행과 같음</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data-bbox="220 277 384 315"><신 설></p> <p data-bbox="220 678 491 716">③·④ (생 략)</p> <p data-bbox="185 813 560 851">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p> <p data-bbox="220 880 560 918">①·② 1.~ 6. (생 략)</p> <p data-bbox="185 1048 560 1288">7.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data-bbox="632 277 986 651">③ 시장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data-bbox="632 678 986 786">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 data-bbox="596 813 986 851">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p> <p data-bbox="632 880 855 987">①·② 1.~ 7. (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23 277 1206 315">③ 항 삭제</p> <p data-bbox="1023 678 1270 716">(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23 813 1437 851">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p> <p data-bbox="1058 880 1281 987">①·② 1.~ 6. (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23 1048 1437 1350">7. 그 밖에 <u>우선지정일자리</u>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2항 제7호 중 “노인 일자리”를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u>현행과 같음</u>)</p> <p>(<u>현행과 같음</u>)</p> <p>4. “<u>우선지정일자리</u>”란 「<u>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p>
<p>제4조(추진계획이 수립 등)①·②</p> <p>1.~ 6. (생략)</p> <p>7. 그 밖에 <u>노인 일자리</u>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현행과 같음</u>)</p> <p>(<u>현행과 같음</u>)</p> <p>7. 그 밖에 <u>우선지정일자리</u> 등 노인 <u>일자리</u>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